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4-56호  
2024. 9. 6.(금)

## 차 례

### 고 시(2)

- 보행자 우선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고시(중리동로 보행자 우선도로)(고시 제2024-99호) ..... 1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고시 제2024-100호) ..... 3

### 공 고(5)

- 중리동 뉴빌리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공고 제2024-903호) ..... 4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910호) ..... 6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911호) ..... 8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912호) ..... 11
- 공인 등록 공고(공고 제2024-922호) ..... 13

### 입법예고(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899호) ..... 1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900호) ..... 3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901호) ..... 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충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914호) ..... 5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양관리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916호) ..... 5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918호) ..... 65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920호) ..... 7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921호) ..... 8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고 제2024-924호) ..... 98

### 행정예고(1)

-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공고 제2024-874호) ..... 104

공 략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 ☎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4-99호

##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에 관한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로17번길 일원에 대하여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고시 개요

구 분	위 치	대상구간		연장/폭(m)	비 고
		시점	종점		
대덕구	대덕구 중리동로17번길	중리동 181-7번지	중리동 207-1번지	L= 450m B=8.0~9.0m	

#### 2. 목적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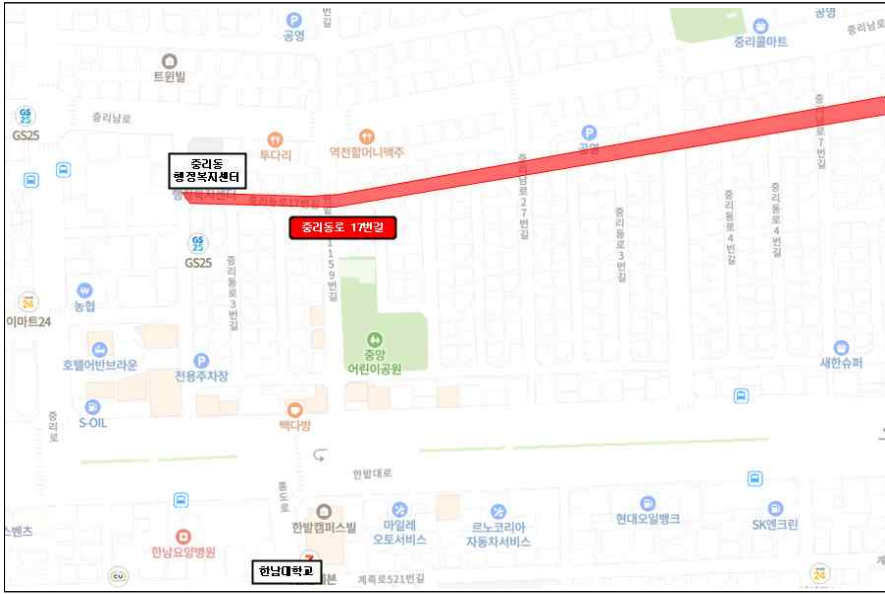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의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조성코자 함

#### 3. 고시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4. 게시장소: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 5. 기 타: 문의사항은 대덕구청 건설과(☎042-608-5214) 연락 바랍니다.

※ 위치도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4-100호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부여 고시일
신대동 411-43	신탄진로115번안길 13(신대동)	건물신축	신탄진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1,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의 안쪽길	2024. 9. 6.
신대동 411-26, 415-7	신탄진로115번안길 35(신대동)	건물신축	신탄진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1,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의 안쪽길	2024. 9. 6.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042-608-5306)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 의견서

## 중리동 뉴:빌리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공청회의 개최목적

- 중리동 뉴:빌리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4. 9. 25.(수) 15:00
- 장 소: 대덕구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 1층 대강당

### 3. 중리동 뉴:빌리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사업개요

- 사업 명: 중리동 중리지구 뉴:빌리지 사업(가칭)
- 위치 및 면적: 중리동 164-5번지 일원 / 105,946m<sup>2</sup>
- 기 간: 2025년 ~ 2029년(5년간)
- 내 용: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노후주택 외관정비 및 골목길 경관개선 등  
※ 공모 준비 중으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4. 기타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2024. 9. 26.(목)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대덕구 도시계획과(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청 별관 4층)  
- 제출방법: 우편, 방문, 팩스(042-608-3841), 이메일(k7407@korea.kr) 등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도시계획과(☎042-608-5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리동 뉴:빌리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관련 질문·건의사항 또는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의견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4. 9. 26.(목)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대덕구 도시계획과(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별관 4층)  
- 제출방법: 우편 및 방문제출, 팩스(042-608-3841), 이메일(k7407@korea.kr) 제출

## 의견란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소속 / 직업	연락처 (집/휴대전화)		
개인정보 활용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중리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li> <li>·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li> <li>·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중리동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 완료일까지</li> </ul>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	

끝.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4. 9. 6. ~ 9. 30. (24일간)
4. 공고대상: 불입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4. 9. 30.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

- 6 -

### [별첨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송달 불가 사유
김*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북로43번길 **, **동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꽂초 투기)	50,000	폐문부재
김*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26번길 **,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꽂초 투기)	50,000	폐문부재
이*람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산초교로59번길 **,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비닐봉지 이용 투기)	200,000	폐문부재
황*명	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 **,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꽂초 투기)	50,000	폐문부재

끝.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4. 9. 6. ~ 9. 30. (24일간)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부과 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자원순환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

[별첨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성명	주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송달불가 사유
박*빈	대전광역시 중구 모암로17번길 **,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912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4. 9. 6. ~ 9. 30. (24일간)
4. 공고대상: 불입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지방행정경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

[별첨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명	주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송달불가사유
김*식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로 **, **동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꽂초 투기)	50,000	폐문부재
손*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북로36번길 **, **층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비닐봉지 이용 투기)	200,000	폐문부재
이*영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42번안길 **, *동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꽂초 투기)	50,000	폐문부재
정*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 **동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꽂초 투기)	50,000	폐문부재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922호

**공인 등록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인 등록 일자: 2024. 9. 6.(금)
2. 공인 등록 내역: (등록) 1개

연번	구분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변경일자	사유
1	공인 등록	대덕구토지정 책과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24.9.6.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공동주택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 신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조).

나. 공동주택 지원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3조).

다.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활동,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 신청 및 감사 실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공동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공동주택과

(전화 : 042-608-4162, FAX : 042-608-3830, E-mail : dlsqo2132@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과 담당자 정인배(전화 : 042-608-41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 소개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장 공동주택 지원

제3조제1항 중 “이 조례는”을 “본 장의 규정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를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3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장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등

제3장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공동주택관리 자문단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20명 내외로 구

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단에게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단지의 각종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검토 등의 검토·자문
2.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및 회계절차 관련 사항의 자문
3.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대표자 선출 등 관련사항 자문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조사활동을 한 조사단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제15조부터 제2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장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제15조(감사대상)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의 대상은 구청장이 관할하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6조(감사범위) ①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요청서에 위반사실 등의 소명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
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사항

제17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들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3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감사계획 통보) 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제21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

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감사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19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하여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4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 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대상단지	단지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소			
요청인 대표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업	
	주소			
동의인수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세대수	
감사범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타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b>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b>				
첨부서류	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3호서식]

### 공동주택 감사 요청인 연명부

□ 단지명 :

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8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p>
<p>&lt;신 설&gt;</p> <p>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행정구역 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2장 공동주택 지원</p> <p>제3조(적용 범위 등) ① 본 장의 규정은 -----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3장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등</p> <p>제14조(공동주택관리 자문단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p>

<p>역시 대덕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20명 내외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단에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주택 단지의 각종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검토 등의 검토·자문</li> <li>2.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및 회계절차 관련 사항의 자문</li> <li>3.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대표자 선출 등 관련사항 자문</li> </ol> <p>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조사활동을 한 조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4장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p> <p>제15조(감사대상)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	---------------------------------------

<신 설>

의 대상은 구청장이 관할하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6조(감사범위) ①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요청서에 위반사실 등의 소명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
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사항

<신 설>

제17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

<신 설>

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들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3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신 설>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감사계획 통보) 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

<신 설>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제21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감사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19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하여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감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4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유용 등 중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 의뢰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관계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9. 4. 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들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4. 23.>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아동위원 구성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을 통해 아동의 권리 증진 및 그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하여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아동위원 임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다.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아동위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재정적 지원 및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가족친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가족친화과  
(전화 : 042-608-6562, FAX : 042-608-3836, E-mail : kiwoong25@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친화과 담당자 장돈경 (전화 : 042-608-65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담당할 아동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위원의 임무)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아동범죄·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3. 아동복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4.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아동위원의 임기 및 정수) ①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 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아동위원은 동별로 2명씩으로 두되, 인구가 2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인구 1만명당 1명을 추가 할 수 있다.

제4조(아동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아동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3. 임무수행의 방법·절차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협회의의 구성) ① 협의회는 제4조에 따른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회의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등) 구청장은 위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위원) 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 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4 - 901호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덕구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을 정함(안 제5조).
- 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가족친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 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가족친화과

(전화 : 042-608-6562, FAX : 042-608-3836, E-mail : kiwoong25@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친화과 담당자 장돈경 (전화 : 042-608-65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

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빈곤아동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교육·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

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 - 914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회계관계공무원의 효과적인 재정보증을 위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을 포괄적으로 정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0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총무과  
(전화 : 042-608-6541, FAX : 042-608-3821, E-mail : ssm4879@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과 담당자 송순미 (전화 : 042-608-65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보증금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설정하여야 할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관은 5천만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3천만원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관계법령

### □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략)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3. ~ 4. (생략)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4 - 916호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양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양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양관리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대덕구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영양취약계층 등 영양관리사업 및 영양·식생활 조사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3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 (석봉동)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전화 : 042-608-4468, FAX : 042-608-3853, E-mail : iqn3854@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담당자 노연희(전화 : 042-608-44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양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한 국민의 건강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식생활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

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4 - 918호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양관리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역먹거리 관련 시설의 운영과 관련, 시설의 활성화와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위탁 대상의 범위를 정비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구민의 건강한 먹거리 공급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지역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탁 대상을 정비함(안 제16조).

나. 인용 조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1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조, 안 제12조, 안 제16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장(참조 : 에너지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에너지산업과  
(전화 : 042-608-6945, FAX : 042-608-3837, E-mail : click0912@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산업과 담당자 최선미(전화 : 042-608-69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로 확보”를 “관로 확보”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량생산”을 “소량 생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이력관리”를 “이력 관리”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공공성”을 “공공성 또는 전문성”으로, “단체 등에”를 “단체·기업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생산자의 <u>판로확보</u> 와 소득향상을 지원하고, 대덕구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먹거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판로 확보</u>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제11조(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제11조(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공공급식지원센터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2. ~ 5. (생략)

제12조(지역먹거리의 생산) ① 지역먹거리는 소규모 생산자들의 다품목 소량생산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생산자가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조성 및 상호간 협력과 연대에 의한 경영방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친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 자재 및 농가 이력관리 사업

3. ~ 6. (생략)

제16조(지역먹거리 관련 시설의 운영) ①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지역먹거리 관련 시설(이하 “관련 시설”이라 한다)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역먹거리의 생산) ① ----- 소량 생산-----

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 이력 관리 -----

3. ~ 6.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역먹거리 관련 시설의 운영) ① -----

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그 밖의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

----- 공공성 또는 전문성-----

----- 단체·기업 등에 -----

-----

② (현행과 같음)

③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4 - 920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 상위법령에서 필수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하는 자의 책무를 신설함  
(안 제4조).

나.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정함(안 제6조).

다. 민간 개방화장실의 개방시간 범위를 명시함(안 제14조).

라.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8조 및 제19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함.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환경과

(전화 : 042-608-6854, FAX : 042-608-3834, E-mail : hykim0422@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 담당자 김현경  
(전화 : 042-608-68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적용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의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

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1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1조(유지·관리 책임부서 지정)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화장실별 책임부서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12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3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음주, 폭력, 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로 인해 우범장소가 되거나, 잦은 기물파손 및 도난 등으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편의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이동·간이화장실 설치)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처리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간이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간이화장실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9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장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9조(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 제18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해야 한다.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책임부서(제11조 관련)**

부서명	적용시설
문화관광체육과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경제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교통과	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과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별표 2]

**과태료 부과 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	법 제21조제1항	40	80	12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	40	60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20	30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설치기준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10	20	30
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기준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20	30	40
4.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20	30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6.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재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치 년 도	관리책임 공무원	소속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급					
	관리주체			성명							
관리인		(전화번호: )				월평균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 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	년월일	관리사항			금액(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시설현황	소재지		관리주체							
	관리인		설치년도							
	규모		부지 : m <sup>2</sup>		화장실 면적 : m <sup>2</sup>					
시설내역	시설내역		대변기수			소변기수		대변기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필증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관리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설내역		대변기수			소변기수		대변기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덕구청장 인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의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4 - 921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폐치규칙안

2.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대덕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명시함에 따라 본 규칙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환경과

(전화 : 042-608-6854, FAX : 042-608-3834, E-mail : hykim0422@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 담당자 김현경(전화 : 042-608-68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의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4 - 924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청소년의 건전생활지도,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등 청소년 보호·선도를 위한 활동을 담당할 청소년지도위원을 구성·운영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의 인용조문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포괄적으로 정비함(안 제1조).

- 나. 청소년지도위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구성, 임기, 임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9조부터 25조까지).
- 라.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 규격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별표를 신설함(안 별표).
- 마. 인용조문 등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2조 및 제13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복지정책과  
(전화 : 042-608-4593, FAX : 042-608-3832, E-mail : ryeong1215@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정책과 담당자 이영화(전화 : 042-608-45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및 제11조”를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기타”를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하고,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위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지도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서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학교장,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장 등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 지도위원은 동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20조(임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은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1조(결격사유)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3. 청소년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4.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과 그 가족 및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 및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미진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5조(지원) ①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종전의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기타

제26조(종전의 제19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제25조 관련)

(앞면)	(뒷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0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b>청소년지도위원증</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margin: 10px auto; height: 150px; position: relative;"> <div style="position: absolute; top: 50%; left: 50%; transform: translate(-50%, -50%); font-size: 2em;">① 사 진</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 margin: 2px;">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 margin: 2px;">②</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 margin: 2px;">③</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 margin: 2px;">④</div>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0 auto; width: 80%;"> <p>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p> <p>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⑥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p> <p style="margin-top: 20px;">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608-0000)</p> </div>
5.5×7.5cm	
<p>※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진 (3×4cm)</li> <li>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li> <li>③ 성명</li> <li>④ 소속기관명(동)</li> <li>⑤ 철인(발급기관 철인)</li> <li>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li> </ul>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청소년기본법</u>」 제5조의2 및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정책 참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란 「<u>청소년기본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p> <p>2.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3. (생 략)</p> <p>제13조(해축) ①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p>	<p>제1조(목적) ----- 「<u>청소년기본법</u>」</p> <p>제2조(정의) -----</p> <p>1. ----- 「<u>청소년 기본법</u>」-----</p> <p>2. (현행과 같음)</p> <p>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13조(해축)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제1항제1호-----</p>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제4장 기타

<신설>

<신설>

<신설>

-----.

1. ~ 5. (현행과 같음)

제4장 청소년지도위원

제19조(위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지도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 3. 지역주민으로서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 4. 학교장,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장 등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 지도위원은 동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20조(임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은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1조(결격사유)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신설>

<신설>

제22조(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 생활의 지도
- 2.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 3. 청소년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 4.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과 그 가족 및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 및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1.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미진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5조(지원) ①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26조(수당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7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신 설>

<신 설>

제19조(수당 등) ① (생략)

제20조(생략)

##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행정예고 내용

-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3. 설치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신속히 대응코자 함

#### 4. 설치장소: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외곽 및 지하주차장(10대)

#### 5. 촬영범위 및 시간: CCTV설치 구역 반경 50m, 24시간 연속 촬영

#### 6. 예고기간: 2024. 9. 6. ~ 2024. 9. 25.(20일간)

#### 7.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

#### 8.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4. 9. 25.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첨부2】 참조

- 제출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79(석봉복합문화센터)  
대전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042-608-5582 fax 042-608-3860)

